

수송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(계약목적)

- ①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지역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③ 시설과 입소자,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③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가 확정되며 또한 수급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제3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1부는 사본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- ⑤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제4조 (급여비용/이용료)

-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월 이용료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금안내(전년대비0.9448%인상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※ 등급 시간별 급여비용(주.야간보호)

()안은 본인부담금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	32,490
본인부담금(15%)	(6,273)	(5,808)	(5,361)	(5,118)	(4,874)	(4,874)
본인부담금(감경9%)	(3,764)	(3,485)	(3,217)	(3,071)	(2,924)	(2,924)
본인부담금(감경6%)	(2,509)	(2,323)	(2,144)	(2,047)	(1,949)	(1,949)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	44,650
본인부담금(15%)	(8,409)	(7,790)	(7,191)	(6,945)	(6,698)	(6,698)
본인부담금(감경9%)	(5,045)	(4,674)	(4,315)	(4,167)	(4,019)	(4,019)
본인부담금(감경6%)	(3,364)	(3,116)	(2,876)	(2,778)	(2,679)	(2,679)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	56,360
본인부담금(15%)	(10,460)	(9,689)	(8,946)	(8,702)	(8,454)	(8,454)
본인부담금(감경9%)	(6,276)	(5,813)	(5,368)	(5,221)	(5,072)	(5,072)
본인부담금(감경6%)	(4,184)	(3,875)	(3,578)	(3,481)	(3,381)	(3,381)
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	56,360
본인부담금(15%)	(11,523)	(10,674)	(9,863)	(9,614)	(9,369)	(8,454)
본인부담금(감경9%)	(6,914)	(6,404)	(5,918)	(5,768)	(5,621)	(5,072)
본인부담금(감경6%)	(4,609)	(4,270)	(3,945)	(3,845)	(3,748)	(3,382)
13시간 이상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	56,360
본인부담금(15%)	(12,356)	(11,447)	(10,575)	(10,329)	(10,086)	(8,454)
본인부담금(감경9%)	(7,413)	(6,868)	(6,345)	(6,197)	(6,052)	(5,072)
본인부담금(감경6%)	(4,942)	(4,579)	(4,230)	(4,132)	(4,034)	(3,382)

비급여항목 비용(단위 : 원)

※ 식사 재료비 2,500원(1식) , 간식비 500원

③ 본인부담금

1.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2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3.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.5%

④ 그 밖의 이용부담액

가.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
나.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.

1. 식재료비
2. 이·미용비
3.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
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
⑥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,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, 간병·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, 요양관리, 취미, 오락, 운동, 간호, 생활지도, 일상동작훈련, 기능훈련,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3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4.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6.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7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6조 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센터와 수급자(보호자)간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
① 센터의 의무

1.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

2.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3.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② 수급자(보호자)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2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3.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

제7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 및 의무)

인수 권리 및 의무 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.

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

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의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